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3
----------	------

제출연월일: 2023. 1. 27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계약 해지조건 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전입 이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의 한시적 사용 기준 마련 등 현실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타 지자체 전입자 종량제봉투의 한시적 사용 허용(제9조의2)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계약해지 조건 명시(제11조제6항)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1조의2)
- 라.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 및 수수료 조정(별표 4)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의5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심의: 기획예산실 사전 협의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8986호, 2022.12.28.)
- 라. 입법예고: 2022. 12. 28. ~ 2023. 1. 19.(22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유지·관리하여야”를 “유지·관리해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며, 같은 호 및 제4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아니한 경우에는”을 “않는 경우”로, “명하여”를 “명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기간·장소”를 “경우 기간·장소”로, “때에는 그”를 “경우 그”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배출하여야”를 각각 “배출해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 ① 구청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 이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를 발급하고, 인증표지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해야 한다.

②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 발급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최대 20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폐기물들”을 “폐기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 대행구역내 하도급을 한 경우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4. 불법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은 경우
5. 대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 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하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탄재”를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로, “등에 대해서는”을 “등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화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해서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또한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는”으로, “아니할”을 “하지 않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에게는 건별로 각호”를 “에게 건별로 각 호”로 한다.

제24조 중 “있을때는”을 “있을 경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u>유지·관리하여야</u>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u>노력하여야</u> 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u>유지·관리해야</u> ----- ----- ----- ----- ----- ----- <u>노력해야</u> -----.</p>
<p>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u>협조</u> 하여야 한다.</p>	<p>제4조(구민의 책무) ----- ----- ----- ----- ----- ----- ----- ----- ----- <u>협조해야</u> -----.</p>
<p>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해 항상 청결을 <u>유지하여야</u>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u>실시하여야</u> 한다.</p>	<p>제5조(청결유지 책무) ----- ----- ----- ----- ----- <u>유</u> <u>지해야</u> ----- ----- <u>실시해야</u> ----- -----.</p>
<p>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p>	<p>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p>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결유지를 명하고자 할 때 미리 해당 명령이행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청결유지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 않  
는 -----  
-----  
----- . -----  
-----  
-----  
-----  
-----  
-----  
----- .

② -----  
-----  
----- .

1. -----  
----- 않아 -----  
----- 않는 -----  
-----

2. 3. (현행과 같음)

4. -----  
----- 않는 -----  
-----

제7조(청결유지 이행) -----  
-----  
-----  
-----  
----- 않는 경우 -----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 명해야 --.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경우 -----  
-----  
-----.

③ -----  
-----  
----- 경우 기간·장소 -----  
-----  
--- 경우 그 ----- 통보 해야 ----.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경우 --  
-----  
----- 배출 해야 ----  
-.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

② -----  
-----  
-----  
----- 배출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 ① 구청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이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를 발급하고, 인증표지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해야 한다.

②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 발급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최대 20매로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  
----- 폐기물-----  
-----  
-----  
----- 노-----  
----- 력해야 -----.

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당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지역을 일정구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설치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경우 -----  
-----.

③ -----  
-----  
----- 경우 -----  
----- 체결해야 -----  
-----.

④ -----  
-----  
-----  
-----  
----- 준수해야 -----.

⑤ -----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편의도, 대상물량,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  
-----  
----- 지급해야  
-----.

⑥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 대행구역내 하도급을 한 경우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4. 불법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은 경우
5. 대행비용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 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하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된 폐기물을 차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경우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  
-----  
----- 사용해  
야 -----  
-----  
-----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연탄재 또는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거리청소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17조(종량제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위탁 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대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종량제봉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수집·운반·처리수수료-----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  
-----  
----- 등은 -----  
----- 않는다. 다만,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화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  
-----  
-----  
-----

투량의 공급대금을 종량제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  
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대행  
업자의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의  
납기 및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대금지원)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명당 월60리터 기준  
량의 종량제봉투 대금 또는 봉  
투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9조(판매소의 신고) ① 판매소  
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  
호 및 대표자 변경, 영업장소의  
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  
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  
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종량  
제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

-----  
-----  
- 지급해야 ----.

② -----  
-----  
----- 대하여 --  
-----.

제18조(종량제봉투 대금지원) --  
----- 사  
람에게 -----  
-----  
-----.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제19조(판매소의 신고) ① -----  
-----  
----- 해야 -----  
-----  
----- 같다.

② -----  
-----  
-----  
----- 자  
는 -----

를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에 따른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2. (생략)

제21조(판매소의 신고사항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 6. (생략)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및 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

-- 하지 않을 --.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  
----- 이행  
해야 ----.

② -----  
-----  
----- . -----  
----- 그렇  
지 않다.

1. 2. (현행과 같음)

제21조(판매소의 신고사항 취소) -----  
----- 경우 -----  
-----  
----- .

1. -----  
-----  
----- 않은 -----

2. (현행과 같음)

3. -----  
-----  
----- 않은 -----

4. ~ 6. (현행과 같음)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  
----- 경  
우 -----  
-----

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인 (구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별로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때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에게 건별로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행정위탁) -----  
-----  
-----  
---- 있을 경우 -----  
-----  
-----

-.

<삭제>

## 【별표 4】

&lt;현 행&gt;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기준(제16조제1항제3호관련)

(단위 : 개당/원)

품 명	규 격	수수료	품 명	규 격	수수료
장 농	120cm장1쪽	13,000	화장대	모든규격	4,000
	90cm장1쪽	10,000			
서랍장	5단이하	6,000	장식장	모든규격	4,000
	4단이하	4,000			
식 탁	6인용이상	5,000	응접세트	장의자	6,000
	6인용미만	4,000		의 자	2,000
자전거	성인용(두발) 아동용(두발) 아동용(세발)	3,000 3,000 2,000	침 대	1인용 전체세트	10,000
				1인용 매트리스	6,000
				1인용반침대, 매트상	4,000
				2인용 전체세트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2인용반침대, 매트상	7,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캐비닛	모든규격	5,000
난로(전기 난로 제외)	모든규격	2,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썩크대	모든규격	4,000	책 상	양수, 대형	6,000
				편수, 소형	4,000
책꽂이	모든규격	1,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3,000
				그랜드	18,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울 겐	모든규격	6,000
벽시계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모든규격	3,000
인형류	60 l (1마대)당	2,000	문 갑	모든규격	3,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품 명	규 격	수수료
장난감류	60 l(1마대)당	2,000	쌀 통	모든규격	3,000
가 방	모든규격	1,000	교자상	모든규격	2,000
액 자	1m이상 1m미만	3,000 2,000	문 짝	모든규격	3,000
진열대	대	13,000	수족관	가로1m이상	6,000
	중	8,000		가로1m미만	3,000
	소	4,000			
카 펫	1평(3.3㎡)당	3,000	거 울	1m이상	3,000
				1m미만	2,000
목 재	60 l(1마대)당	3,000	깨진유리	30 l (kg)당	3,000
플라스틱류	60 l(1마대)당	3,000	항아리	20 l 이상	3,000
				20 l 미만	2,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변기통	모든규격	5,000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규격	4,000	장 판	1평(3.3㎡)당	2,000
육조	모든규격	6,000	화 분	모든규격	2,000
이불(담요)	1채당	2,000			

(주)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 &lt;개정안&gt;

##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기준(제16조제1항제3호관련)

품목별	개정안	
	규격	수수료(원)
장롱	90cm초과	14,000
	90cm이하	12,000
서랍장	5단이상	10,000
	5단미만	7,000
식탁	6인용이상(대리석)	7,000(20,000)
	6인용미만(대리석)	5,000(15,000)
의자	사무용(바퀴)	5,000
	목재, 철재	3,000
자전거	성인용	3,000
	아동용	3,000
	세발자전거	2,000
유모차	모든규격	3,000
난로(전기난로제외)	난로(석유)	4,000
썩크대	길이 1m이상	10,000
	길이 1m미만	7,5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행거, 옷걸이	모든규격	2,000
벽시계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2,000
인형류	50L(1마대)당	5,000
장난감류	50L(1마대)당	5,000
가방	소형가방	2,000
	기내용	2,000
	화물용	3,000
	골프가방	4,000
액자	1m이상	3,000
	1m미만	2,000
진열장(유리)	120cm이상	15,000
	90cm~120cm미만	12,000
	90cm미만	10,000
카펫	3.3㎡당	3,000
목재(나무묶음)	50L(1마대)당	5,000
플라스틱류	50L(1마대)당	3,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보일러	모든규격	6,000
	연탄	5,000

품목별	개 정 안	
	규격	수수료(원)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규격	4,000
욕조	길이1m이상(도기류)	15,000
	길이1m미만(도기류)	10,000
	플라스틱류	6,000
이불(담요)	1채당	2,000
화장대	가로120cm이상	7,500
	가로90cm이상~120cm미만	6,500
	가로90cm미만	5,000
장식장, 거실장, TV 장 등	대리석	20,000
	120cm이상	13,000
	90cm이상~120cm미만	8,000
	90cm미만	5,000
침대	1인용 전체세트	15,000
	1인용 매트리스	10,000
	1인용 받침대, 머릿장	5,000
	2인용 전체세트	23,000
	2인용 매트리스	15,000
	2인용 받침대, 머릿장	8,000
돌·흡침대	2인용	36,000
	1인용	25,000
원목 프레임	2인용	16,000
	1인용	10,000
돌·옥·황토보료	2인용	20,000
	1인용	15,000
캐비닛	높이1m이상	7,000
	높이1m미만	4,000
책상	양수(대형)	7,000
	편수(소형)	5,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8,000
	그랜드	25,000
신발장	120cm이상	7,000
	90cm이상	5,000
	90cm미만	4,000
교자상	60cm이상	4,000
	60cm미만	2,000
문짝	모든규격	6,000

품목별	개 정 안	
	규격	수수료(원)
수족관	가로1m이상	12,000
	가로1m미만	6,000
깨진유리	30L(kg)	4,000
유리(거울,판유리)	1㎡당	2,000
강화유리	1㎡당	10,000
항아리	20L이상	3,000
	20L미만	2,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변기통	양변기물탱크	5,000
	양변기(세트)	10,000
장판	3.3㎡당	2,000
빈화분	모든규격	2,000
가스레인지대	60cm이상	4,000
	60cm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높이1m미만	2,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물탱크(저수조)	톤당	10,000
쇼파	5인이상	20,000
	4인용	15,000
	3인용	10,000
	2인용	7,000
	1인용, 스톨	5,000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kg마대 기준	5,000
탁자	6인용이상(대리석)	7,000(20,000)
	6인용미만(대리석)	5,000(15,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30,000
휴식쇼파(카우치)	모든규격	10,000
	1인용	5,000
홈씨어트	세트	10,000
캐타워	대형	8,000
	소형	5,000
커튼, 블라인드, 버티칼	모든규격	4,000
의료기매트	모든규격	10,000
고무대야	60리터이상	8,000
	60리터미만	5,000
개집	중대형견용	8,000
	소형견용	4,000
전자피아노	1m이상	13,000
	1m미만	6,000

품목별	개 정 안	
	규격	수수료(원)
돗자리	모든규격	3,000
카펫, 대자리, 매트류	3.3㎡당	3,000
욕(온수)매트	2인용	8,000
	1인용	6,000
병풍	모든규격	5,000
폐소화기	모든규격	3,000
진열장	120cm이상	15,000
	90cm~120cm미만	12,000
	90cm미만	10,000
찬장	120cm이상	15,000
	90cm~120cm미만	12,000
	90cm미만	10,000
간판	2m이상	6,000
	2m미만	4,000
운동기구	러닝머신(소)	10,000
	러닝머신(대)	20,000
칸막이 (판넬)	1m당	5,000
합판	1㎡당	3,000
라텍스매트리스(15cm)이하	2인용	8,000
	1인용	6,000
책장	90cm이상	10,000
	60cm~90cm미만	8,000
	60cm미만	6,000
일체형 책상	150cm이상	15,000
	150cm미만	13,000
불박이장	90cm초과	20,000
	90cm이하	15,000
일반마대 (잡동사니)	50리터	5,000
금고	60cm이상	50,000
	60cm미만	30,000
응집셋트	삭 제	
화일캐비닛	삭 제	
울겐	삭 제	
문갑	삭 제	
쌀통	삭 제	
거울	삭 제	

※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의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 근 거 법 규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 조례개정 등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발생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3. 작성자

- 소 속: 환경미화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김남희
- 연락처: (052)290-3761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수정이유

- 별표4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기준(제16조 1항제3호관련) 개정안의 품목별에서 규격과 수수료 차이가 없음에도, 구분되어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명시함.

### 수정안 대비표(별표4)

개정안			수정안		
품목별	규격	수수료(원)	품목별	규격	수수료(원)
진열장 (유리)	120cm이상	15,000	<삭제>		
	90cm~120cm미만	12,000			
	90cm미만	10,000			
진열장	120cm이상	15,000	진열장	120cm이상	15,000
	90cm~120cm미만	12,000	(유리진열 장 포함)	90cm~120cm미만	12,000
	90cm미만	10,000		90cm미만	10,000
카펫	3.3㎡당	3,000	<삭제>		